

보조금 지원 건물을 사용용도를 위반한 임대차 사실 적발 -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은 지

나치게 가혹함, 취소 판결: 광주지방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



1. 사안의 개요

1)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. 1. 9. '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택배업을 하는 D과 김 공장을 하는 E에게 불법으로 임대하고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, 원고가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임대하고 약 1,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으므로 그 수사를 위해 경찰청에, 보조사업자 선정과정,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, 전라남도에 관련 내용을 이첩한다'는 취지로 의결하였고, 피고는 위 의결 내용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D과 E에게 돈을 받고 임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2. 보조금 반환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- 청구기각, 보조금 환수 적법

3. 행정소송 -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, 청구인용 판결

4.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이유 - 비례의 원칙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, 보조금 반환처분
취소 판결

2)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농산물 선별 또는 신선 보관 외의 용도인 D의 택배업과 E의 김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, 앞서와 같이 원고가 이를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,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그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나 예상보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으며,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D과 E에게 이 사건 시설물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.

3)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환수하는 금액이 336,562,000원에 이르고, 원고는 전남 해남군 F 지역 청년회원 중심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며, 이 사건 시설물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.

첨부: 광주지방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구합13667 판결

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